

저는 건설안전기술사와 산업안전지도사를 모두 보유하고 있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.

반대의 이유

1. 산업안전지도사는 건설 분야에 대한 전공, 이론 및 실무 경험이 전혀 없는 경우에도 시험에 응시/합격 가능한 시험

- 1) 기술사는 해당 분야 최소 4년(기사 취득 후)의 실무 경력이 있어야만 응시 가능하므로 기술사 보유자는 건설분야의 이론 및 실무적 역량을 갖춘 것으로 간주할 수 있음 (기술사 개인간 차이 미고려)
- 2) 그러나, 지도사는 단 하루의 경험이 없어도 시험 응시가 가능하고 합격 후, 3개월의 실무 교육만 이수하면 등록 가능함
- 3) 따라서, 지도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기술사와 동등한 역량을 인정하는 것은 응시 자격의 차이를 감안할 때 매우 비합리적인 것으로 사료됨

2. 21년 지도사 2차 시험에 대한 노동부의 집단 민원 사례를 통한 지도사 응시자들의 기본 인식

- 1) 안전관련 문제가 아닌 일반 건설 시공에 관한 문제가 주로 출제됨에 따라 응시자들이 고용노동부에 집단민원을 제기한바 있음
(기사 : <https://www.dnews.co.kr/uhtml/view.jsp?idxno=202107191434576720275>)
- 2) 그러나, 산안법에서 정하고 있는 지도사의 업무는 안전관련 서류 작성 지도 외에 가설 구조물의 붕괴 등에 대한 안전성 평가를 포함하고 있음
- 3) 법에서 정한 지도사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건설분야의 시공 및 이론적 지식은 필수적인 사항이나, 이를 2차시험에서 평가하는 것에 대해 집단 민원을 제기하는 것은 산업안전지도사를 건설분야의 등급으로 인정받기 어려운 점을 반증함

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지도사의 업무 (시행령 별표 31)

2. 법 제14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산업안전지도사(건설안전 분야)
 - 가. 유해위험방지계획서, 안전보건개선계획서, 건축·토목 작업계획서 작성 지도
 - 나. 가설구조물, 시공 중인 구축물, 해체공사, 건설공사 현장의 붕괴우려 장소 등의 안전성 평가
 - 다. 가설시설, 가설도로 등의 안전성 평가
 - 라. 굴착공사의 안전시설, 지반붕괴, 매설물 파손 예방의 기술 지도
 - 마. 그 밖에 토목, 건축 등에 관한 교육 또는 기술 지도

3. 지도사가 기술사, 건축사와 등급의 자격인가?

- 1) 법적으로 기술사, 건축사와 등급으로 간주할 수 있는 근거가 없음에도,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지도사가 건설안전기술사의 업무 보다 많은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음을 들어, 건설안전기술사보다 높은 등급 또는 그 이상의 자격임을 주장함
- 2) 그러나, 이는 산업안전보건법의 테두리 안에서만 법적으로 유효한 주장임
- 3) 산안법에서 그렇게 정하고 있다고 해서 건설분야에서도 동일해야 하는 당위성은 없다

고 사료됨